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7호 소개

###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 사건은 탈원전과 관련하여 발전소 운영업자들의 재산권 보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탈원전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6년 결정). 이에 따른 개선입법으로 원자력법 제16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2020. 9. 29.) 결정에서 개선입법이 효력을 발하지 않았으며, 실령 효력을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전히 적절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6년 헌법불합치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2호(2016. 12.)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2호(2016. 12.)

<https://ri.court.go.kr/cckri/popup/selectNewsLetter.do?classSeq=92>

오스트리아 판례로 소개된 <조력자살 금지 조항의 위헌성>은 조력자살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오스트리아 형법 제7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근(2020. 12. 11.)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에 ‘자신의 삶을 형성할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 예외 없이 모든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조력자살금지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각각의 회원 국가 사정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 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일랜드 대법원은 자살하거나 죽을 때를 결정할 권리는 헌법

상 권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호(2013. 10.) 소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자주성의 표현으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2020. 4.) 국외통신원 소식으로 소개].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호(2013. 10.)

<https://ri.court.go.kr/cckri/popup/selectNewsLetter.do?classSeq=13>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2020. 4.)

<https://ri.court.go.kr/cckri/popup/selectNewsLetter.do?classSeq=161>

미국 연방대법원의 <루이지애나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문제되고 있는 낙태시술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2016년의 텍사스 주 낙태제한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낙태 접근권에 부당한 부담(undue burden)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문제된 루이지애나 주 법률에 대하여 대법관 5:4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1호(2016. 10.)에 소개된 ‘텍사스 주 낙태제한법 위헌결정’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1호(2016. 10.)

<https://ri.court.go.kr/cckri/popup/selectNewsLetter.do?classSeq=91>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불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은 성별에 의한 간접적 차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문제된 연금제도에 여성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하여 여성 차별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캐나다 권리·자유 헌장’ 제15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장 제15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및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북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헌법재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구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포함)에서 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가장 최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 심리 등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세르비아 헌법재판소,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북마케도니아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소개한 적이 있는 기관들이지만, 그동안의 헌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다시 소개하였습니다.

#### □ 세계헌법재판 관련 법령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조직법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과 구성, 인사와 사무제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칙’을 실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제1장 및 제2장(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소개하였고, 2021년 4월에 발행될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8호에서 나머지 부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상위법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조직법은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24호(2017년 4월)에 소개되었고 헌법재판연구원 발간 2017년 국가별 법령집으로 출판된바 있으니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미결구금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프랑스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특히 미결구금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을 경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최근(2020. 10. 2.)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독일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독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조치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감염예방조치의 법률적 근거에 관한 헌법학계의 논의와 함께, 집회금지, 예배금지 등 개별적 감염예방조치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 또는 관련 법규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들 중 인용결정이 내려진 사건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 조화점을 찾기 위한 독일 학계와 실무의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금지된 살충제 성분, ‘네오니코티노이드’ 재도입을 둘러싼 헌법적 논의>는 생태계 교란 등을 이유로 유럽 내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에 관하여 프랑스 정부가 예외적 허용의 여지를 넓히는 방향의 법률개정을 하자 이에 관하여 판단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최근(2020. 12. 10.) 합헌 결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농업생산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과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